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지 아동의 국적 취득 전 아동수당 신청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95호)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176호)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594호)
- 이수진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941호)
- 곽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84호)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74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검토의견	11
1. 국적 취득 전 인지 아동의 아동수당 신청(송재봉의원안)	11
2. 보호자 변경 신청 시 조사·질문 근거 마련(소병훈의원안)	17
3. 미취학아동 보호자 양육 여부 정기 확인(김대식의원안)	22
4.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직권주의로 전환(이수진의원안)	28
5.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및 불복 절차 안내 의무 명시(곽상언의원안) ...	41
6.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및 아동수당 지급 연계(백선희의원안) ...	47

I. 제안경위

1.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9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3. 27.
- (3) 회 부 일 : 2026. 03.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송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예컨대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친부의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적 취득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아동과 보호자는 국적 취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

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2.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1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6. 03. 27.
- (3) 회 부 일 : 2026. 03.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분리조치가 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여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여 보호자의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3.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59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대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04. 23.
- (3) 회 부 일 : 2026. 04.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임.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매달 300만원 이상의 각종 수당과 식료품 지원을 받은 가정의 생후 20개월 아동이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례, 신생아를 유기한 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 되어 유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장기간 양육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아동이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박탈당하고 그 수당을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현상도 사회적으로

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아동이 해외 장기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동수당 환수결정액은 2023년 22억 3,095만원에서 2024년 26억 8,342만원으로 1년 만에 20.3% 늘었음. 따라서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가 실제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여부 등 아동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인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4.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94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5. 13.

(3) 회 부 일 : 2026. 05.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5.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8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6. 19.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아동수당법」 제19조 제1항은 아동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아동수당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아동수당법」 제19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아동수당법」 제19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제1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 · 제5항 신설 등).

6. 백선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74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선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7. 03.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방법 습득 등 양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국적 취득 전 인지 아동의 아동수당 신청(송재봉의원안)

-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아동이 「국적법」에 따른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10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민법」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조정·화해를 포함한다)을 받은 아동의 보호자등은 아동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 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 ----- ----- -----.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아동수당 수급권”이라고 정의하면서¹⁾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로 해당 아동의 사망, 국적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음²⁾.

□ 즉, 대한민국 국적 유무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실체적 요건으로 해석되므로 외국인인 아동에게는 원칙적으로 아동수당 수급권이 부여되지 아니함.

□ 그런데 아동수당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데 동 법에서는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을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9조)³⁾,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8조)⁴⁾.

□ 이와 관련하여 「난민법」⁵⁾이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⁶⁾

1)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법」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4)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에서는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나 특별기여자에게도 아동수당 지급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런데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국적법」 제3조)⁷⁾,

승소일부터 국적취득까지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해당 아동은 국적 취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음.

□ 개정안의 취지는 인지청구소송 승소 후 향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될 아동이 절차적으로 국적취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7)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우선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적인 아동수당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아동수당 수급권을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외국인에게는 「난민법」이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각 규정을 통해 아동수당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지급 신청 절차 규정만을 개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해당 아동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에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됨. 다만, 아동이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함(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⁸⁾.

○ 개정안은 인지청구의 승소 판결을 받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8)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단서 생략)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 출생일이 속하는 달에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출생시에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 신청시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 아동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적법」에서는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의 효과를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로 규정하고 있음⁹⁾.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므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적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적 취득 전에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보호자 변경 신청 시 조사·질문 근거 마련(소병훈의원안)

-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에 대해서도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및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u>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u> (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 ----- ----- ----- ----- ----- ----- ----- ----- -----

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법 제10조제1항),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분리조치가 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¹⁰⁾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법 제12조제1항).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10) “보호자등”이란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을 의미함(법 제6조제1항). 나아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①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함(동 시행규칙 제4조)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25년 기준 아동수당 수급아동은 약 215만명 정도이며, 그 중 당해연도에 보호자를 변경한 아동은 18,691명임.

-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아동수당 수급아동수는 2021년 2,395,976명에서 2025년 2,148,086명으로 10.3%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보호자 변경 아동수는 17,058명에서 18,691명으로 9.5% 증가하였음.

<아동수당 지급 및 보호자 변경 현황>

(단위: 명)

연도	지급 아동 수	보호자 변경 아동 수
2021	2,395,976	17,058
2022	2,554,726	20,532
2023	2,466,089	24,099
2024	2,275,867	21,396
2025	2,148,086	18,691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주: 지급 아동 수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이고, 보호자 변경 아동 수는 해당 연도에 한 번이라도 보호자를 변경한 아동 수입

□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여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여 보호자의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이 신청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런데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으로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7조제1항은 조사 대상에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하고 있고, 제12조는 보호자의 변경을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보호자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상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함(법 제2조제4호).

< 「아동수당법」 제7조 및 제12조 >

제7조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 ¹¹⁾ 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 ----- ----- <u>--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u> ----- ----- ----- ----- ----- ----- ----- ----- ----- -----.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u>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u>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보호자 변경 신청 시 법 제3조, 제7조, 제12조 등에 따라 방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미취학아동 보호자 양육 여부 정기 확인(김대식의원안)

☐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전 수급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illegible]

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 -----.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인 수급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아동수당의 지급 이후에도 수급권의 변동이나 실제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질문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7조).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나아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

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아동수당법」
제7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아동수당법 시행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신청조사·질문’과 ‘확인조사·질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조사·질문의 시기 등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시행령 제6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6조(조사·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신청조사·질문과 확인조사·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조사·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질문 2. 확인조사·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질문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질문 나.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질문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청조사·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2. 확인조사·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 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서 확인조사·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하였을 때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질문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 및 절차
 3. 조사·질문의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6 아동수당 사업안내』를 보면 해외 장기체류 아동, 사망아동,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에 대하여는 연 4회, 해외입양아동에 대하여는 연 2회의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하고 있음.

< 연간 확인조사 항목 및 내용 >

조사대상	조사주기	주요내용
해외 장기체류 아동	연4회(정기)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하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및 지급 정지 결정
사망아동	연4회(정기)	사망 아동에 대하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및 지급 정지 결정
복수국적아동	연1회	신청 당시 복수국적아동 중 국외여권 미등록 아동에게 국외여권 등록 고지 의무 안내 및 복수국적아동의 국외여권 등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연4회(정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수급 받는 아동의 중복 수급 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해외입양아동	연2회(정기)	해외입양아동의 지급 정지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 『2026 아동수당 사업안내』, p.82.

□ 한편 아동수당의 부정수급 및 환수 통계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아동수당 환수 대상자수는 3,189명이고, 환수금액은 16억 5,300만원임.

< 출생연도에 따른 부정수급 통계 >

연도	환수 대상자 수(명)										
	총계	'16년 이전생	'17 년생	'18 년생	'19 년생	'20 년생	'21 년생	'22 년생	'23 년생	'24 년생	'25 년생
2021	3,874	2,192	702	575	247	104	54	-	-	-	-
2022	2,753	1,794	269	248	118	125	79	120	-	-	-
2023	6,086	2,554	867	804	566	473	453	323	46	-	-
2024	4,547	580	447	556	635	700	681	654	227	67	-
2025	3,189	191	214	336	371	444	459	421	457	256	40
연도	환수 금액(백만원)										
	총계	'16년 이전생	'17 년생	'18 년생	'19 년생	'20 년생	'21 년생	'22 년생	'23 년생	'24 년생	'25 년생
2021	1,262	669	271	206	88	20	7	-	-	-	-
2022	934	428	179	163	80	44	21	21	-	-	-
2023	2,182	776	340	380	267	183	152	76	7	-	-
2024	2,642	199	228	326	538	538	459	287	55	11	-
2025	1,653	72	106	196	220	284	282	219	206	64	6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6년 4월 추출 데이터 기준

□ 개정안은 미취학 수급아동의 양육 여부와 보호자의 자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의 변동을 적기에 파악하고 잘못된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의 양육에 사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아동수당 부정수급 환수사유를 보면 2025년 아동수당 환수결정건수 총 3,170건 중 대부분(93%)인 2,949건은 수급아동의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것임.

< 2025년 아동수당 부정수급 환수사유 >

환수대상구분	2025년	
	환수결정건수(명)	환수결정금액(천원)
해외장기체류	2,949	1,585,170
실종·가출·행방불명	-	-
사망	14	5,400
기타	207	50,109
계	3,170	1,640,680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6년 8월 추출 데이터 기준

- 보건복지부는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해외 장기체류 아동, 사망아동,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등을 대상으로는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미취학 아동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아동수당 수급 정보만으로는 아동의 취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을 구분하여 관리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임.

4.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직권주의로 전환(이수진의원안)

☐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지급 대상 아동을 조사하여 수급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출생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2장 아동수당의 지급 등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 ----- ----- ----- ----- 등-----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삭 제>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
급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
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
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
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
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
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
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
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
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
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
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 제9조에 따라 아

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

한 아동(이하 “아동수당지급

미결정자”라 한다)의 보호자

----- 아동수당지급미

결정자 및-----

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삭 제

2. ~ 8. (생략)

③ ~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
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

----- . 다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받
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_____

--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
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⑦ (생략)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후단 신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

----- . 같
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
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
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u>지급 신청</u>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3. (생략) ② 3. (생략)	----- ----- ----- ----- ----- -----. 1. ----- ----- ----- <u>지급 결정</u> ----- ----- ----- ----- ----- ----- -----. 2. 3. (현행과 같음) ② 3. (현행과 같음)
---	---

□ 「아동수당법」은 2018년 제정 당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2019년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되어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되었음.

□ 그 이후로 지급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4조제1항)¹²⁾.

12) 다만, 부칙에 따라 연도별로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9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음

< 아동수당 지급대상 제·개정 현황 >

2018년 제정	2019년 개정	현 행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 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u>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u> 지급한다. (후단 생략)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7세 미만의 아동에게</u>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13세 미만의 아동에게</u>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현행 아동수당 지급절차는 보호자의 신청을 행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의 대상·금액·신청방법을 안내하면(법 제5조), 보호자등이 신청하고(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질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함(법 제7조).

「아동수당법」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u>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u>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 ③ (생략) 제7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

· 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다만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음(법 제10조).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5년 기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수는 2,212,298명이고 지급 결정자수는 2,197,662명으로, 지급률은 99.34%임.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급률은 매년 99%를 넘고 있는데, 이는 아동수당에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령 기준 내 대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급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임.

＜아동수당 대상자 및 지급결정 현황＞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지급결정자수	지급률
2021	2,398,394	2,377,531	99.13
2022	2,793,993	2,767,241	99.04
2023	2,465,046	2,443,393	99.12
2024	2,306,778	2,287,590	99.17
2025	2,212,298	2,197,662	99.34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주: 외국인 제외, 매년 12월 기준

□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현행 용어 중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변경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조항을 신설하며,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출생한 날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급대상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 그럼에도 보호자의 제도 인지 여부와 신청행위에 따라 수급권자인 아동의 권리 실현 여부가 달라질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제10조제1항에서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일부 자구의 정비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행법은 아동수당 지급에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나아가 방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0조제1항 본문).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u>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u>

- 반면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당연지급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지급 시기도 원칙적으로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제1항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이 <u>출생한 날</u>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단서 생략).

- 그런데 개정안은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바,

지급을 결정한 날 이전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나아가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을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라고 약칭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7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u>보호자</u> (이하 “ <u>아동수당지급신청자</u> ”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아동수당지급신청자</u>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 ---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u>아동</u> (이하 “ <u>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u> ”라 한다)의 보호자 ----- ----- ----- ----- ----- ----- ----- <u>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u> 및 ----- ----- ----- ----- ----- ----- (단서 생략)

- 약칭은 생략된 문구나 단어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
오인될 수 있는 약칭은 피해야 하는데¹³⁾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결정 후의 아동은 수급아동으로¹⁴⁾, 지급결정 전의 아동은

1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232.

14)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지칭되는바, 지급결정 전의 아동을 “미결정아동”과 같이 약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하는 입장으로,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고, 아동수당은 아동의 출생과 함께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신청 월이 아닌 출생 월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실체적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5.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및 불복 절차 안내 의무 명시(곽상언 의원안)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5항 및 제6항).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이의신청)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9조(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합</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 의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까지에 서----- ----- ----- -----.
--	--

□ 현행법은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나 그 밖의 처
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9조제1항).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그 기간 내
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나아가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같은 조 제4항).

「아동수당법」
제19조(이의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u>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한편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서면주의를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24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u>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 나아가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2025년 3월 18일 신설된 같은 법 제36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함(같은 법 제36조제5항 본문).
-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음(같은 법 제36조제5항 단서).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보격차를 완화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법령에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및 관련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¹⁵⁾,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 「아동수당법」은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¹⁷⁾,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 시행규칙 제15조제2항)¹⁸⁾.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도 이의신청 접수 시 서면으로 결과 통지, 행정심판·소송의

15)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아동수당법」

제19조(이의신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

제기를 안내 중이므로 「아동수당법」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고,

법제처도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현행 법령에 따라서도 이의신청 접수 시 서면으로 결과 통지, 행정심판·소송의 제기 안내 중이며, 이의신청에 대해 개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따르므로 「아동수당법」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법제처	☐ 「행정기본법」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①「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제36조제6항) 개정 규정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향후 「행정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개별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내용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그 때마다 매번 추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및 아동수당 지급 연계(백선희의원안)

- 개정안은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에게 매년 부모교육 이수 증빙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 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13조제3항·제4항).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보호자의 부모교육 이수)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매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자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② (생략) <u><신 설></u>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등이 정당</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권고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정지된 기간의 아동수당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아동수당법」은 2018년 제정 당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2019년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되어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되었음.

□ 그 이후로 지급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4조제1항)¹⁹⁾.

19) 다만, 부칙에 따라 연도별로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9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음

- 현행법상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지급대상 아동이고 (법 제2조제1호·제2호),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신청·수령·관리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법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등).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현행법은 아동이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실종되는 등 아동수당 지급의 객관적인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조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3조).

「아동수당법」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u>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u>.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u>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u>
--

□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제2항의 부모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명 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을 전제로,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19745,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

현행	개정안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교육의 내용·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발급 등에-----.

보호자가 매년 동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참고로 현재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영유아보육법」, 「교육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 참고 : 온·오프라인 부모교육 제공 현황 >

부처	제공기관	제공방식	주요내용
복지부	복지로	온라인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영상 제공
교육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오프라인	건강한 부모 역할 등 교육콘텐츠 제공
교육부	학부모온누리	온라인	발달단계별 온라인 강의 및 가이드북 제공
성평등부	가족센터	오프라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등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자가 올바른 양육방법과 아동 발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자의 증명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수급권자인 아동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아동이지만 개정안에 따른 증명서 제출의무는 보호자에게 부과되고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호자가 아니라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정지로 나타나게 됨.

-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부모 등의 활동을 이유로 아동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과(동 협약 제2조), 아동에 관한 입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동 협약 제3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인 아동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보호자의 교육 참여와 아동수당지급을 연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유관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교육 여부와 결부시킬 경우 수급권 및 기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고, 성평등가족부는 시스템 구축 예산 및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업무 부담 및 민원 유발 등이 우려된다는 등의 입장임.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신중 검토 -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보편수당으로 교육 여부와 결부시킬 경우 아동의 수급권 및 기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조손·장애인·맞벌이 가정 등 교육 접근성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2027년 도입될 자동지급 제도를 고려할 필요
성평등 가족부	☐ 신중 검토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 중 가족센터 교육은 이수증 발급·활용이 없어,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 및 시간 필요
경상남도	☐ 신중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업무 부담 및 민원 유발,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문제, 기존 행정 절차와 연계하여 교육 유도할 필요 - 보호자 교육이수 의무화로 보호자의 양육역량 강화, 반면 아동의 수급권 보장 취지 및 자동지급제 도입 취지와 상충될 우려

문 의 처

02)6788-5500